



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 결 서

사 건 경기2010의결9 케이티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의결요청

의 결 요 청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
기 관

의 결 일 2010. 6. 11.

우리 위원회는 위 의결요청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주 문

케이티노동조합 규약 제24조제1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된다.

의결요청취지

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케이티노동조합이 2009. 3. 23. ~ 3. 24. 개최된 2009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변경 결의된 케이티노동조합 규약 제24조제1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된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다.



이 유

1. 의결요청 경위

케이티노동조합 조합원 김종백은 2009. 3. 23. ~ 3. 24. 개최된 2009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변경 결의된 케이티노동조합 규약 중 제24조【선출】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규정된 ‘직접투표’에 위반된다고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였고, 이에 성남지청장은 같은 해 4. 15. 우리 위원회에 동 규약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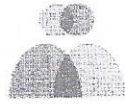
2. 인정사실

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, 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케이티노동조합은 2009. 3. 23. ~ 3. 24.까지 지리산수련관에서 2009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. [심문회의 진술내용]

나. 케이티노동조합은 2009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케이티노동조합 규약 개정을 결의하였으며, 그 중 제24조【선출】가 변경되어 개정된 규약에 의거 전국대의원 선출은 2010. 2. 10.부터 시행되었다. [전국대의원 개정(안)]

개정 전	개정 후
제24조[선출]	제24조[선출]
① 전국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	① 본 조합의 전국대의원은 지방본부 대의원 중 지방본부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.
② 전국대의원은 지부단위로 선출한다.	② 전국대의원은 지방본부단위로 선출한다.
③ 선출인원은 지부조합원이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0인 단위로 1인씩 선출하고, 단수 51인 이상일 경우	③ 본 조합의 전국대의원 선출인원은 지방본부 조합원이 150인 이상일



<p>에는 1인을 추가 선출한다.</p> <p>④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.</p>	<p>경우에는 150인 단위로 1인씩 선출하고, 단수 101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을 추가 선출한다.</p> <p>④ 본 조합의 전국대의원이 임기 중 그 소속(지방본부)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국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.</p> <p>⑤ 지방본부 대의원 및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조직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.</p>
--	---

다. 전국대의원은 케이티노동조합 규약 제25조(전국대의원대회 의결·심의 사항)에 의거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,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신입에 관한 사항,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, 기금 및 자산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, 상급, 연합단체 및 국제 노동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, 조합의 합병·분할에 관한 사항,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, 기타 중요한 사항, 단체교섭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[케이티노동조합 규약 제25조]

라. 케이티노동조합 조합원 김종백은 개정되기 전 규약에 의하면 전국대의원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, 규약이 개정되어 전국대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렸다고 2010. 1. 26.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신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. [노동조합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신청서(2010. 1. 26.)]

마.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은 2010. 2. 9. 신청인 김종백을 조사하였고, 2010. 3. 11. 피신청인 케이티노동조합을 조사한 후 2010. 4. 15.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규약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다. [규약 시정명령



의결요청(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)

【관련규정】

《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》

제11조(규약)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·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4.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

제16조(총회의 의결사항)

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
2.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

제17조(대의원회)

-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.

제21조(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)

-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-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규약 위반 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.

《케이티노동조합 규약》

(개정 전 규약)

제24조 【선출】

- ① 전국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- ② 전국대의원은 지부단위로 선출한다.
- ③ 선출인원은 지부조합원이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0인 단위로 1인씩 선출하고, 단수 51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추가 선출한다.
- ④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.

(개정 후 규약)

제24조 【선출】



- ① 본 조합의 전국대의원은 지방본부대의원 중 지방본부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전국대의원은 지방본부단위로 선출한다.
- ③ 본 조합의 전국대의원 선출인원은 지방본부조합원이 150인 이상일 경우에는 150인 단위로 1인씩 선출하고, 단수 101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을 추가 선출한다.
- ④ 본 조합의 전국대의원이 임기 중 그 소속(지방본부)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국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.
- ⑤ 지방본부 대의원 및 기타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조직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.

제25조 【의결사항】

-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1.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2.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신임의 관한 사항
 3.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
 4. 사업 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
 5. 기금 및 자산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6. 상급, 연합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 7. 노동쟁의발생결의에 관한 사항
 8. 조합원 징계, 재심 및 사면복권에 관한 사항
 9. 상급 및 연합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
 10. 단체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
 11. 조합의 합병, 분할에 관한 사항
 12.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
 13. 기타 중요한 사항

《케이티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》

제42조(후보자등록)

- ① 전국대의원의 후보는 각 지방본부에 배정된 전국대의원수 만큼 지방위원장이 추천한 지방본부 대의원으로 같음한다.

제44조(투, 개표)

- ① 전국대의원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.
 1. 해당 지방본부위원장이 추천한 전국대의원후보에 대해 지방본부대의원



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.

2. 투, 개표는 지방본부대의원대회 시 선출된 사찰이 실시한다.

② 지방본부대의원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.

1. 투표는 조합원 개개인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.
2. 투표용지는 1명의 조합원이 지방본부대의원 1인의 후보자에 기표할 수 있다.
3.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.

3. 우리 위원회의 판단

본 건 의결요청에 대하여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의 의견과 증빙자료, 관련 법규, 우리 위원회가 신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1항에는 “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조 제2항에는 “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다.

케이티노동조합은 지방본부대의원 및 지방본부대의원 중에서 선출한 전국대의원이 있으며, 지방본부대의원은 지방본부에서 발생하는 안건을 심의·의결하고, 전국대의원은 케이티노동조합 규약 제25조에 의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사항 대부분을 심의·의결하고 있어 전국대의원대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서 의미하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라고 볼 수 있다.

살피건대, 케이티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전국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되어야 함에도 케이티노동조합 규약 제24조제1항에는 “본 조합의 전국대의원은 지방본부대의원 중 지방본부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국대의원을 그



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없게 하는 것인바, 개정된 노동조합 규약 제24조 제1항의 전국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조합원의 직접 선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.

4. 결 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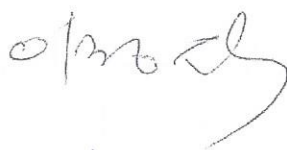


그렇다면,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케이티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경기2010의결9 케이티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의결

2010. 6. 11.

경기지방노동위원회

심판위원회

위원장	공익위원	이정식 
	공익위원	손우태 
	공익위원	허선홍 



2010. 7. 8.

경 기 지 방 노 동 위 원 회



이는 원본임.

2010. 7. 8.

행정주사 유 준 보

